

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 월 2 일

여 수 시 장

2022. 9. 2



여수시 조례 제1755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 ----- -.
1. ~ 5. (생 략)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u>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u>
<u><신 설></u>	<u>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u>
<u><신 설></u>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

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